

고시 제 2016-173호(약제), 시행일 2016-09-01

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
- 아 래 -

가. 대상 : 6-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(ADHD)상병이 확진된 경우. 단,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(소견서 기재 항목은 [붙임] 참조).

나. 진단 :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(DSM-5: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) 또는 국제질병분류(ICD-10: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)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.

다. 기간 :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함.

■ 고시 신설/개정 사유

: 국내·외 허가사항, 교과서, 임상진료지침, 임상논문, 관련학회 의견, 관련 급여기준 등을 참고하여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(ADHD) 진단통계매뉴얼 개정 및 성인에 진단된 ADHD 투여대상과 평가방법을 설정함.

■ 변경 전 고시번호(시행일자): 고시 제2013-127호(2013.9.1.)